

『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구미시 청년의 능동적인 청년정책 참여기구인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수당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청년정책사업을 추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규정 보완(안 제9조 제1항)
- 나. 청년정책참여단 수당 지급 규정 추가(안 제16조)
- 다. 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순서 변경(안 제14조 ~ 제16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,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불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
- 청년정책참여단 활동 수당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규정 구체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
- 청년정책참여단이 당초 50여명을 모집하고자 계획했으나 28명이 구성되어 운영 중인 것을 감안할 때 청년정책참여단의 활발한 활동과 다양한 청년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을 위한 수당지급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